

# 연천군인사관리규정 [ 1991. 3. 25 ] [ 훈령 제178호 ]

일부개정 1996. 6. 14 훈령 제236호  
일부개정 2001. 9. 8 훈령 제342호  
일부개정 2001. 11. 19 훈령 제34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천군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 하  
므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천군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승진

제3조(기본원칙) 소속기관(본청의 실·과·소 및 읍·면)의 상위직 결원보충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기관간의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하여 본청(직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 상호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승진방법) ① 6급이하의 승진임용은 결원발생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정한 승진임용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일괄심의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시 6급이하는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  
로 하되, 특수분야로서 읍·면에 해당 직렬이 없거나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군  
수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2. 근무성적이 당해기간내에 “가”평정을 받은 자
3. 타기관으로의 진출자
4. 교육기간 중 근무태도 및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기타 승진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근무성적 평정) ① 근무성적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공무원별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특수분야근무자관리) ①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자는 전문지식의 최대한 활용을 위하여 당해분야에서 장기근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당해분야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상분야는 기술직렬 중 전기, 기계, 축산, 수의, 의무, 약무, 간호, 의료기술, 지적, 환경, 선박, 화공직렬과 군수가 특수분야로 인정하는 분야로 한다.  
<개정 '96. 6. 14>

### 제3장 전보 및 보직관리

제7조(전보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직위에 1년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직위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임용기준에 의하여 전보한다. 다만, “별표 2”의 적용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인사교류 등)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적격성,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벽지근무자와 격무부서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부서 공무원의 민원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벽지근무자”라 함은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정 제12조 제2항의 특수지를 말하며, 이 경우 연고지 및 본인의 희망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결원보충)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자는 결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시험 성적순에 의거 읍·면에 임용하고 군 본청 7급이하공무원 결원시에는 읍·면의 해

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입인사의 공정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공무원 중 전입 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전입순위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시 작성한다.

1. 전입시험성적 : 30%
2. 최근의 근무성적 : 35%
3. 읍면 근무경력 : 20%
4. 교육훈련성적 : 10%
5. 가점(포상, 특수지경력) : 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평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의2(전입자격) 읍·면 공무원중 본청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전보제한사유가 소멸된 자
2. 읍·면에 근무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4.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이상 받지 아니한 자
5.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당해직급에서 1년 이내에 상위직급으로 승진 가능한 자는 전입순위자 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전입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의3(전입자격의 제외)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의 적용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양고사에 대비한 군 소양고사우수자(1, 2, 3위), 도정시책 평가결과 유공자, 청백봉사상수상자등 군수가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전입순위자명부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제4장 교육

제10조(교육성적우수자 우대) 초급간부양성반 교육수료자는 읍·면 6급 직위에 최우선승진발령하여야 하며 승진 전보된 자가 장기간 읍·면 근무경력이

있을 때에는 군 본청에 전보한다.

제11조(교육성적불량자 조치)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 수업태만으로 평가결과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공무원교육훈련법등에 의한 각과정 교육수료자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임용기준 및 비위자 관리

제13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요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임용제한)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시켜야 한다.

제15조(비위 문책사항관리) 소속공무원이 징계처분이외의 경고, 훈계 또는 타직위로 전보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14 훈령 제23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8 훈령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연천군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각 실과소원장”을 “각 실·과·원·소장”으로 하고, 제7조중 “기획

법무계장”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연도표시인 “19”를 삭제한다.

② 연천군공무원출장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연도표시인 “19”를 표시한다.

③ 연천군이미지형성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로마자표기인 “YONCHON”을 “YEONCHEON”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기획법무담당주사“를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별표 2 구분란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하고,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한다.

별표 3중 “기획법무담당주사”를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④ 연천군 재정투·융자심사업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⑤ 연천군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위원장으로 하며 감사계장”을 “위원으로 하며 감사담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연도표시인 “19”를 삭제한다.

⑥ 연천군조례제정및 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12조중 “기획법무담당주사”를 “법무의회담당주사”로 한다.

⑦ 연천군민원실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민원고,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한다.

⑧ 연천군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제5항중 “민원담당주사”를 “복합민원담당주사”로 한다.

⑨ 연천군문서평가심의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연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별표 연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기구표중 “기획법무담당”을 “기획담당”으로, “수도시설담당”을 “상하수도담당”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⑪ 연천군통계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내무장관”을 “총무과장”으로 “서무계장” 및 “주무계장”, “부읍면장”, “총무계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별표2중 연도표시인 “19”를 삭제한다.

⑫ 연천군행정관리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내무과”를 “총무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계장” 및 “과장”을 “담당” 및 “실장”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⑬ 연천군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8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중 연도표시인 “19”를 삭제하고, “계원” 및 “계장”을 “담당자” 및 “담당”으로 한다.

별표 보고체계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단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읍·면 : 읍·면·동장, 담당계장)”을 “총무과(읍·면 : 읍·면장, 주무담당)”으로 한다.

⑭ 연천군 민방위협의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무부서란중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민원과”를 “종합민원실”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총무과”로, “연천군상수도사업소”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한다.

⑮ 연천군직장예비군중대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⑯ 연천군부동산권리사무증서보관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0조중 “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주무실국과장”을 “담당”으로, “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 ⑰ 연천군공무원숙소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연도표시인 “19”를 삭제한다.
- ⑱ 연천군군립도서관자료등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연도표시인 “19”를 삭제한다.
- ⑲ 연천군군립도서관자료복사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연도표시인 “19”를 삭제한다.
- ⑳ 연천군환경미화원채용및복무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무단투기물”을 “무단투개폐기물”로 한다.
- ㉑ 연천군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계장”을 “담당”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중 연도표시인 “19”를  
삭제한다.
- ㉒ 연천군재난종합상황실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재난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고, 중간부분의 “복부  
출장소”를 “제2청”으로 한다.
- ㉓ 연천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중 연도표시인 “199”를 삭제한다.
- ㉔ 연천군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연천군지방안전점검대책반기구표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 ㉕ 연천군사고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상수도  
사업소”를 “맑은물관리사업소”로 한다.  
별표2 내지 별표4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공보담당”을 “홍  
보기획담당”으로, “공보담당주사”를 “홍보기획담당주사”로 한다.  
별표5중 “상수도사업소”를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  
과”로 한다.
- ㉖ 연천군읍·면직원복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연천군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중 연도표시인 “19”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연천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 및 연천군이웃돕기  
금고지부설치규정과 연천군읍·면농민상담소설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 11. 19 훈령 제348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개정 2001. 11. 19>

###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구분 기관별	평 정 대 상		평 정 자	확 인 자
	계 급	직 위		
본 청 직속기관 사 업 소	5 급	실 과 장	부 군 수	군 수
	6 급	5 급 직 무 대 리	부 군 수	군 수
	6 급	사 업 소 장	자치행정과장	부 군 수
	6급이하	담 당 및 직 원	실과소원장 및 사 업 소 장	부 군 수
읍 · 면	5 급	읍 면 장	부 군 수	군 수
	6급이하	담 당, 직 원	읍 면 장	자치행정과장

[별표 2] <개정 2001. 9. 8>

### 주요직위임용기준

직 위(직급)	임 용 기 준
실과장(5급) 읍·면장	○ 일반직 5급 ○ 5급 직무대리자 (경력, 능력, 업무의 중요, 해당직위의 전문성 등 감안)
본청계장(6급) 직속기관 계장, 사업소장	○ 군, 읍·면의 6급중 행정능력 우수자 (경력, 능력, 업무의 중요, 해당직위의 전문성 등 감안)
읍·면담당(6급)	○ 군, 읍·면 7급중 승진요건 구비자

[별표 3]

## 비 위 관 계 기 록 카 - 드

○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비위기록 내용(훈계, 경고등)

처 분 당 시			비위내용	적발기관	조치사항		기록자 (인)
소 속	직 위	직 급					

※ 본 카-드는 공무원인사기록 카-드와 함께 보관한다.

[별표 4]

### 전입순위자명부 항목별 평점기준

항 목 별	평 점	평 점 기 준		
총 계	100			
1. 전입시험 성 적	30	○ 객관식 및 주관식 ○ 행정직은 일반상식과 행정법, 기타직은 일반상식과 전공과목		
2. 근무성적 평 정 점	35	○ 당해 계급에서 실시한 최근의 근무성적 평정점		
3. 읍·면 근무경력	20	○ 당해 계급의 근무경력 1월마다 0.5점 산정 - ㉠경력 ○ 당해 계급의 바로 하위계급 경력 1월마다 0.08점 - ㉡경력		
4. 교육훈련 성 적	10	○ 당해계급에서 받은 5년이내의 직무교육 성적 ○ 당해계급에서 교육 미이수시 하위계급의 훈련성적 ○ 이수기간별 평정점		
		5년이내	8년 이내	8년 경과
		성적의 10%	5%	없 음
5. 가 점	5	○ 포상가점(당해 계급의 직무수행 공적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 - 군수, 도지사표창 : 1점 - 국무총리표창 : 1.5점 - 대통령, 청백봉사상 : 2.0점 ○ 특수지 근무경력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정에 의한 특수지로 당해 계급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		